

하남시 고시 제2016 - 63호

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

하남시 덕풍동 383-1번지 일원『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』에 대하여 경기도 고시 제2016-75호(2016. 5. 13.)호에 의거 하남A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(2014.11.12.)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됨에 따라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(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) 제1항 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16일

하 남 시 장

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

- 가. 명 칭 : 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92-3 정민빌딩 3층
- 다. 승 인 일 : 2009. 10. 12.
- 라. 사업시행 예정구역
 - 1) 명 칭 : 하남A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
 - 2) 위 치 : 하남시 덕풍동 383-1번지 일원
 - 3) 면 적 : 197,003㎡

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6. 5. 16.

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사유

- 경기도 고시 제2016-75호 (2016. 5. 13.)에 의거 하남A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됨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 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

4. 문의사항 : 하남시 주택과 도시재개발팀(☎ 031-790-63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